#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세무는 20×1년 12월 31일 개당 원가 ₩150인 제품 100개를 개당 ₩2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세무는 판매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반품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반품률은 5%로 추정되며, 반품제품 회수비용, 반품제품 가치하락 및 판매당일 반품은 없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년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이다.

② 20×1년 인식할 이익은 ₩4,750이다.

③ '환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20×1년 말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750이다.

④ 동 거래의 거래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20×1년 말 인식할 부채는 ₩250이다.

**2. 상품매매업을 하는 (주)세무의 20×1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조<br>구분 | 종목<br>구분 | 장부<br>수량 | 실제<br>수량 | 단위당<br>원가 | 단위당<br>순실현가능가치 |
|---|---|---|---|---|---|
| I | 상품A | 150개 | 140개 | ₩1,000 | ₩900 |
| | 상품B | 180개 | 180개 | 500 | 450 |
| II | 상품C | 200개 | 190개 | 750 | 650 |
| | 상품D | 430개 | 400개 | 1,200 | 1,300 |

**종목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가 ₩8,000,000일 때, 조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① ₩7,958,000 ② ₩7,981,000 ③ ₩8,000,000 ④ ₩8,040,000 ⑤ ₩8,043,000

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 ₩100,000(표시이자율 6%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100,000에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 ₩8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이며,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의 113.24%를 지급한다.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
|---|---|---|
| 1년 | 0.8929 | 0.8929 |
| 2년 | 0.7972 | 1.6901 |
| 3년 | 0.7118 | 2.4018 |

① 전환사채 발행시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95,015이다.

② 20×1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는 ₩4,985이다.

③ 20×2년 부채 증가금액은 ₩6,050이다.

④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40,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대가 ₩1,994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0,000에 상환할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11,452이다.

4.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에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500,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2년 연장(20×3년 1월 1일 현재 잔존내용연수 4년)되고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를 20×4년 1월 1일에 현금을 수령하고 처분하였으며, 처분손실은 ₩6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령한 현금은 얼마인가?

① ₩190,000 ② ₩480,000 ③ ₩540,000 ④ ₩580,000 ⑤ ₩700,000

5.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현금 ₩20,000을 지급하였다.

| 구분 | (주)세무 | (주)한국 |
|---|---|---|
| 취득원가 | ₩500,000 | ₩35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220,000 | 20,000 |
| 공정가치 | 270,000 | 300,000 |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한국이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90,000이다.

③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다.

④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

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와 (주)한국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6. (주)세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와 영업용 건물을 각각 ₩100,000과 ₩1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20×2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2,000을 지출하였다. (주)세무는 유형자산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토지 | 건물 |
|---|---|---|
| 20×1년 말 | ₩95,000 | ₩7,000 |
| 20×2년 말 | 120,000 | 6,500 |

동 거래가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2,000 증가 ② ₩2,500 증가 ③ ₩4,500 증가

④ ₩22,000 증가 ⑤ ₩22,500 증가

7. 20×1년 4월 1일 (주)세무는 다음의 영업용 건물을 ₩500,000에 처분하였다.

| |
|---|
| ○ 취득원가: ₩2,000,000 |
| ○ 취득 시 정부보조금 수령액: ₩450,000 |
|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25%) |
| ○ 잔존가치: ₩200,000 |
| ○ 20×1년 1월 1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 ○ 기말평가: 원가모형 |

동 건물의 감가상각 및 처분이 (주)세무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① ₩150,000 감소 ② ₩187,500 감소 ③ ₩227,500 감소
④ ₩250,000 증가 ⑤ ₩262,500 증가

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에게 원가 ₩100,000의 제품을 ₩2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1년 6월 30일 이전에 (주)한국이 요구할 경우 (주)세무가 판매한 제품을 ₩21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20×1년 6월 30일까지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하였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매입일 예상 시장가치는 ₩210,000 미만이다.)

①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②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③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금융부채 ₩200,000을 인식한다.
④ 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이자비용 ₩10,000을 인식한다.
⑤ 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매출액 ₩200,000을 인식한다.

9.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제품 200개를 고객에게 1년에 걸쳐 개당 ₩1,000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동일한 제품 100개를 개당 ₩800에 고객에게 추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동 시점까지 기존 계약 수량 200개 가운데 3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추가된 제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추가 제품의 계약금액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계약 수량 중 58개와 추가 계약 수량 중 50개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인식할 총수익은?

① ₩100,000 ② ₩100,800 ③ ₩118,000 ④ ₩128,000 ⑤ ₩130,000

10.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3년치 영업용 건물 관련 화재보험료 ₩1,200,000을 선급하고 전액 20×1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오류는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되어 수정되었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20×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매 기간 균등하게 발생하고, 모든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100,000 증가한다.

② 당기 비용이 ₩700,000 발생한다.

③ 기말 이익잉여금이 ₩400,000 증가한다.

④ 기말 자산항목이 ₩400,000 증가한다.

⑤ 기말 순자산이 ₩300,000 증가한다.

11.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1년 초와 20×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 조건

| | |
|---|---|
| 기초자산A |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br>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
| 기초자산B |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br>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 시점별 소비자물가지수

| 구분 | 20×0년 12월 31일 | 20×1년 12월 31일 |
|---|---|---|
| 소비자물가지수 | 120 | 132 |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
| 1년 | 0.9259 | 0.9091 |
| 2년 | 0.8573 | 0.8264 |
| 3년 | 0.7938 | 0.7513 |

① ₩5,527 ② ₩5,727 ③ ₩5,778 ④ ₩7,727 ⑤ ₩7,778

12.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 20×1년 중 보통주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 | 변동내용 |
|---|---|
| 1월 1일 | 기초유통보통주식수(액면금액 ₩5,000)는 1,000주이다. |
| 4월 1일 | 자기주식 200주를 1주당 ₩8,500에 취득하다. |
| 7월 1일 |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에 재발행하다. |
| 10월 1일 |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

○ 20×1년 초 신주인수권 600개를 부여하였는데, 동 신주인수권 1개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8,000이고, 20×1년도 보통주 가격현황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br>종가 | 1월 1일~12월 31일<br>평균주가 | 12월 31일<br>종가 |
|---|---|---|
| ₩7,000 | ₩10,000 | ₩12,000 |

20×1년도 희석주당순이익이 ₩840일 때,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① ₩840 ② ₩941 ③ ₩952 ④ ₩966 ⑤ ₩1,027

13.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②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③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

④ 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

14.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당기순이익: ₩500,000
- 법인세비용: ₩6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9,000
- 감가상각비: ₩4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3,500
- 사채상환이익: ₩5,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

○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 구분 | 20×1년 1월 1일 | 20×1년 12월 31일 |
|---|---|---|
| 매출채권(순액) | ₩120,000 | ₩90,000 |
| 재고자산(순액) | 80,000 | 97,000 |
| 매입채무 | 65,000 | 78,000 |
| 유형자산(순액) | 3,000,000 | 2,760,000 |
| 당기법인세부채 | 40,000 | 38,000 |
| 이연법인세부채 | 55,000 | 70,000 |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① ₩627,500 ② ₩640,500 ③ ₩649,500 ④ ₩687,500 ⑤ ₩877,000

15. 다음은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20×1년도 각사업연도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은 ₩70,000이며, 20×1년 중 당기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3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기법인세자산 차변에 기입하였다. 나머지 ₩40,000은 20×2년 3월 말에 관련 세법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 세무조정에 따른 유보 처분액(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20×1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초잔액 | 당기중 증감 | | 기말잔액 |
|---|---|---|---|---|
| | | 감소 | 증가 | |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90,000 | ₩18,000 | ₩13,000 | ₩85,000 |
| 정기예금 미수이자 | △50,000 | | △10,000 | △60,000 |
|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 120,000 | | 30,000 | 1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000 | △5,000 |
| 합계 | ₩160,000 | ₩18,000 | ₩28,000 | ₩170,000 |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20×0년 말과 20×1년 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은? (단, 제시된 사항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나타난 △는 (-)유보를 나타낸다.)

① ₩28,000 ② ₩36,000 ③ ₩38,000 ④ ₩68,000 ⑤ ₩102,000

**16.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이들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정보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④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4월 1일 | 20×1년 6월 1일 | 20×2년 2월 1일 |
|---|---|---|---|
| 공사대금 지출액 | ₩2,000,000 | ₩4,800,000 | ₩900,000 |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20×1. 4. 1. | ₩1,000,000 | 20×2. 9. 30. | 5% |
| 일반차입금 | 20×1. 1. 1. | ₩1,500,000 | 20×3. 12. 31. | 8% |
| 일반차입금 | 20×1. 3. 1. | ₩1,800,000 | 20×2. 12. 31. | 12% |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① ₩300,000 ② ₩325,000 ③ ₩337,500 ④ ₩380,000 ⑤ ₩550,000

**18.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②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④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9. (주)세무는 20×1년 말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0)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2년 7월 1일부터 동 건물 전부를 본사사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7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10년, 잔존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동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 현황이다.**

| 구분 | 20×1년 12월 31일 | 20×2년 7월 1일 | 20×2년 12월 31일 |
|---|---|---|---|
| 공정가치 | ₩1,000,000 | ₩1,200,000 | ₩1,000,000 |

**20×2년 12월 31일 동 건물을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0,000이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은?**

① ₩550,000 ② ₩610,000 ③ ₩670,000 ④ ₩750,000 ⑤ ₩916,667

20. (주)세무의 20×1년 중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용 및 주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주식기준보상 A<br>20×1년 4월 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1인당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기준 예상 가득인원은 90명이다.<br>○ 주식기준보상 B<br>20×1년 8월 1일 (주)대한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주식 200주를 지급하였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br>○ 주식기준보상 C<br>20×1년 11월 1일 (주)민국이 2개월 이내에 원재료 1톤을 공급하면 주식 30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주)민국은 11월 1일에 공정가치 ₩80,000의 원재료 0.7톤을 공급하였으며, 12월 1일에 공정가치 ₩50,000의 원재료 0.3톤을 공급하여 주식 300주를 수취하였다. |

| 일자 | 1주당 주가 | 일자 | 1주당 주가 |
|---|---|---|---|
| 4월 1일 | ₩300 | 12월 1일 | ₩420 |
| 8월 1일 | 320 | 12월 31일 | 450 |
| 11월 1일 | 400 | | |

동 거래로 인한 (주)세무의 20×1년 당기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당기 자본 증가금액은?

① ₩589,000 ② ₩590,800 ③ ₩599,000 ④ ₩791,500 ⑤ ₩801,500

21. (주)세무는 3년 만기 회사채A(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4%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8%)를 20×1년 1월 1일 1매당 공정가치 ₩896,884에 발행하였다. 동 일자에 (주)세무가 발행한 회사채A를 공정가치로 1매씩 매입한 회사들의 매입 및 분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계정분류 | 매입수수료 | 회사채A 처분일 |
|---|---|---|---|
| (주)대한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200 | - |
| (주)민국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00 | 20×3년 9월 17일 |
| (주)한국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0 | 20×2년 1월 10일 |

20×1년 12월 31일 회사채A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이 큰 회사순으로 나열한 것은? (단, 모든 회사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며, 회사채A 관련 회계 처리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제외할 때 회사채A를 매입한 세 회사의 총포괄이익은 같다.)

① (주)대한 > (주)민국 > (주)한국 ② (주)민국 > (주)대한 > (주)한국

③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④ (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

⑤ (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2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875,645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주)세무는 20×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일부를 ₩637,000에 조기상환하여, 사채상환이익이 ₩2,184 발생하였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① ₩190,906 ② ₩286,359 ③ ₩334,086 ④ ₩381,812 ⑤ ₩429,539

23. (주)세무는 (주)대한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만기 4년인 회사채를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
|---|
| ○ 발행일: 20×1년 1월 1일 |
| ○ 액면금액: ₩1,000,000 |
| ○ 이자지급: 액면금액의 4%를 매년 말에 후급 |
| ○ 만기 및 상환방법: 20×4년 12월 31일에 전액 일시 상환 |
|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8% |

(주)세무는 20×1년 말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50,000으로 추정하였다. 20×2년 말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2년 말 현재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향후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만기일에 수취할 원금의 현금흐름을 ₩700,000으로 추정하였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20×1년 말과 20×2년 말의 시장이자율은 각각 10%와 12%이며, 회사채 취득 시 손상은 없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 8% | 10% | 12% | 8% | 10% | 12% |
| 1년 | 0.9259 | 0.9091 | 0.8929 | 0.9259 | 0.9091 | 0.8929 |
| 2년 | 0.8573 | 0.8264 | 0.7972 | 1.7833 | 1.7355 | 1.6901 |
| 3년 | 0.7938 | 0.7513 | 0.7118 | 2.5771 | 2.4869 | 2.4018 |
| 4년 | 0.7350 | 0.6830 | 0.6355 | 3.3121 | 3.1699 | 3.0373 |

| 20×1년 | 20×2년 | 20×1년 | 20×2년 |
|---|---|---|---|
| ① ₩19,399 증가 | ₩206,773 감소 | ② ₩19,399 증가 | ₩216,913 감소 |
| ③ ₩19,399 증가 | ₩248,843 감소 | ④ ₩31,834 증가 | ₩206,773 감소 |
| ⑤ ₩31,834 증가 | ₩248,843 감소 | | |

24. 20×0년 1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리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서버(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고정리스료는 리스개시일에 지급을 시작하여 매년 ₩500,000씩 총 3회 지급한다. 리스계약에 따라 (주)세무는 연장선택권(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초자산의 소유권도 리스이용자에게 귀속)을 20×3년 12월 31일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리스료 ₩300,000은 20×4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주)세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은 상당히 확실하다. 20×1년 1월 1일 기초자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가 인도되어 사용 개시되었으며, (주)세무는 리스개설과 관련된 법률비용 ₩30,000을 동 일자에 지출하였다.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0%이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다. 이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상각비의 합계액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
| 1년 | 0.9091 | 0.9091 |
| 2년 | 0.8264 | 1.7355 |
| 3년 | 0.7513 | 2.4869 |
| 4년 | 0.6830 | 3.1699 |

① ₩408,263 ② ₩433,942 ③ ₩437,942 ④ ₩457,263 ⑤ ₩481,047

25.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옳은 것은?

①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②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중요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⑤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26. (주)세무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 원재료 | ₩27,000 | ₩9,000 |
| 재공품 | 30,000 | 15,000 |
| 제 품 | 35,000 | 28,000 |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금액은 모두 직접재료원가이며 당기 중 매입한 원재료는 ₩83,000이다. 기초원가(prime cost)는 ₩306,000이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의 50%가 제조간접원가이다. (주)세무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당기 매출원가는?

|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
| ① | ₩408,500 | ₩511,000 |
| ② | ₩511,000 | ₩511,000 |
| ③ | ₩511,000 | ₩526,000 |
| ④ | ₩526,000 | ₩526,000 |
| ⑤ | ₩526,000 | ₩533,000 |

2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87,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47,000단위이다. 또한 전환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35,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25,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① 10% ② 20% ③ 25% ④ 75% ⑤ 80%

28. 다음은 (주)세무의 당기 및 전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할 때 (주)세무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 | 당기 지급액 | 당기말 잔액 | | 전기말 잔액 | |
|---|---|---|---|---|---|
| | | 선급비용 |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선급비용 |
| 공장관리비 | ₩250,000 | ₩150,000 | - | ₩25,000 | - |
| 수도광열비 | 300,000 | - | ₩100,000 | 25,000 | - |
| 복리후생비 | 150,000 | - | 100,000 | - | ₩35,000 |

① ₩615,000 ② ₩735,000 ③ ₩765,000 ④ ₩965,000 ⑤ ₩1,065,000

29. (주)세무는 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판매관리비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초에 수집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3,000,000(급여 ₩2,000,000, 기타 ₩1,000,000)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 | 고객주문처리 | 고객관계관리 | 계 |
|---|---|---|---|
| 급여 | 40% | 60% | 100% |
| 기타 | 20% | 80% | 100% |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량 |
|---|---|---|
| 고객주문처리 | 고객주문횟수 | 2,000회 |
| 고객관계관리 | 고객수 | 100명 |

(주)세무는 당기 중 주요 고객인 홍길동이 30회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길동의 주문 1회당 예상되는 (주)세무의 평균 매출액은 ₩25,000이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60%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분하는 경우, (주)세무가 당기에 홍길동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① ₩255,000 ② ₩265,000 ③ ₩275,000 ④ ₩279,500 ⑤ ₩505,000

30. (주)세무는 결합공정에서 제품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8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 과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제품 |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 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
| A | ₩20 | 3,000단위 | ₩10,000 | ₩23 |
| B | 30 | 2,000단위 | 15,000 | 40 |
| C | 40 | 2,000단위 | 15,000 | 50 |

① A ② A, B ③ A, C ④ B, C ⑤ A, B, C

31.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단위당 변동원가는 ₩225이고 공헌이익률은 40%이다. 당기 예상 판매량은 2,000단위부터 6,0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당기 총고정원가가 ₩630,000일 때 ₩120,0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확률은?

① 25% ② 45% ③ 55% ④ 60% ⑤ 75%

32.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에 판매한다. 연간 생산가능 수량 2,000단위에 근거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 | |
|---|---|
| 직접재료원가 | ₩10 |
| 직접노무원가 | 15 |
| 단위수준 활동원가 | 25 |
| 제품수준 활동원가 | 14 |
| 설비수준 활동원가 | 6 |
| | ₩70 |

위 원가 항목 중 제품수준 활동원가와 설비수준 활동원가는 고정원가로, 나머지는 변동원가로 가정한다. 총고정원가 중 ₩10,00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세후순이익 ₩16,000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① 460단위 ② 520단위 ③ 550단위 ④ 600단위 ⑤ 625단위

33. (주)세무의 기초 제품수량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500단위, 기말 제품수량은 1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300이며,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당기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 |
|---|---|
| 직접재료원가 | ₩250,000 |
| 직접노무원가 | 80,00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160,000 |
| 변동판매관리비 | 40,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40,000 |
| 고정판매관리비 | 15,000 |

① ₩13,000 ② ₩23,000 ③ ₩33,000 ④ ₩43,000 ⑤ ₩53,000

34. (주)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판매한다.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제품A는 ₩200, 제품B는 ₩150이며, 공헌이익률은 제품A는 40%, 제품B는 5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수량배합은 1:2로 일정하고, 당기 총고정원가는 ₩34,500이다. 당기 이익 ₩23,000을 얻기 위한 총매출액은?

① ₩120,000 ② ₩125,000 ③ ₩128,000 ④ ₩132,000 ⑤ ₩138,000

35. (주)세무의 최대생산능력은 5,000개이다. 정규시장에 1개당 ₩200에 4,000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50개씩 묶음(batch) 생산하며, 4,000개를 생산하는 경우 원가는 다음과 같다.

| | |
|---|---|
|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 ₩240,000 |
|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 80,000 |
| 고정원가 | 400,000 |
| | ₩720,000 |

1개당 ₩130에 1,5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100개씩 묶음 생산하며, 특별주문은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① ₩75,000 증가 ② ₩30,000 증가 ③ ₩20,000 증가
④ ₩20,000 감소 ⑤ ₩75,000 감소

36.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실제 제품 생산량 : 700단위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작업시간 : 2시간
-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 ₩12,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 ₩2,000(불리)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4,000(유리)

① 600 ② 800 ③ 1,000 ④ 1,200 ⑤ 1,400

37.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 : 3kg×₩10/kg=₩30
-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 : ₩12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 ₩12,6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 ₩4,000(유리)

당기 실제 제품 생산량이 2,0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① 300kg ② 400kg ③ 500kg ④ 600kg ⑤ 700kg

38.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 활동원가 중 예방원가(prevention cost)와 평가원가(appraisal cost)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활동 | 원가(또는 비용) |
|---|---|
| 원재료 검사 | ₩40 |
| 반품 재작업 | 10 |
| 재공품 검사 | 50 |
| 납품업체 평가 | 90 |
| 공손품 재작업 | 10 |

| 활동 | 원가(또는 비용) |
|---|---|
| 설계엔지니어링 | ₩20 |
| 보증수리원가 | 70 |
| 예방적 설비유지 | 30 |
| 반품 재검사 | 20 |
| 품질교육훈련 | 60 |

①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 더 크다.

②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크다.

③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50 더 작다.

④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70 더 작다.

⑤ 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작다.

39.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으로 지정된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고, B사업부는 부품을 추가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이다. A사업부는 부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20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3,000단위 판매하거나 단위당 판매가격을 ₩18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4,000단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A사업부가 외부시장에서 2가지 판매가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사업부가 A사업부에게 부품 2,0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A사업부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① ₩80 ② ₩100 ③ ₩110 ④ ₩120 ⑤ ₩180

40.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20,000이며,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일 때 교정비용은 ₩30,000이다.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90,000이 발생한다. 공정이 정상일 확률은 60%, 비정상일 확률은 40%이다. 공정 상태에 대해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그 완전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가능한 최대금액은?

① ₩4,000 ② ₩12,000 ③ ₩16,000 ④ ₩20,000 ⑤ ₩32,000

# 상 법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②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③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지점이 있는 회사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②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④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인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작성 시 대표 발기인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②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정함이 없을 경우,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④ 모든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⑤ 주식회사가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44.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발기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5.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ㄱ. 주주, 이사, 감사, 회사채권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ㄴ. 설립무효의 소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
| **ㄷ.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취소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 |
| **ㄹ.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6. 상법상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상의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결의한 경우 이사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47.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②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8.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할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②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③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④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⑤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했을 때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49.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④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50. 상법상 종류주식 및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이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유인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위 종류주식의 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④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53. 상법상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甲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甲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甲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甲의 매도청구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A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甲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여 甲이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공탁한 날에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54.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 ㄴ.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 ㄷ.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 ㄹ.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5. 주식의 병합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병합 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대해서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주식병합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56. 상법상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7.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④ 준법지원인은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다른 업무 중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58.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하지 않은 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영업시간 외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9.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④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③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나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6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A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주식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의 3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A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A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A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⑤ A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① 회사의 신설합병 시 설립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②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③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를 하는 경우

⑤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63.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외에 구두·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유효하다.

**64.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ㄱ.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 **ㄴ.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 **ㄷ. 감자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 **ㄹ.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감사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65. 상법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회사의 사후 설립
② 회사의 분할
③ 회사의 해산
④ 회사의 계속
⑤ 회사에 대한 감사의 책임의 면제

**66.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7.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소송제기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그 제소는 무효로 된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그 회사는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그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기존의 주주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신주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9.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70.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의 경우와 달리 상법상 상계금지의 제한규정은 없다.

②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사채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된다.

⑤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71.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발행사항에 관하여 결정한다.

② 사채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④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72.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절차에 따른다.

③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②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초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74. 주주가 甲(지분율 75%), 乙(지분율 20%), 丙(지분율 5%) 3명으로 구성된 A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주식회사의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에서 甲, 乙, 丙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甲, 乙, 丙은 누구든지 A 주식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A 주식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 주식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A 주식회사의 해산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법정청산 시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76.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77.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 것으로 본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지 못한다.

**78.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에 새로 가입하면서 정관 변경 시까지도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⑤ 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79.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⑤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80.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주주가 부담하는 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④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